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인 구 청 년 과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외 1인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허민근 의원(2인)

찬 성 자: 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
이정희·장미경 의원(6인)

1. 제안이유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거기본법」 제3조
- 2) 「주택법」 제2조
- 3) 「청년기본법」 제20조
- 4)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나. 부서검토: 인구청년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4.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 안정을 기본원칙으로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지원계획)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임대료 보조사업
2.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청년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7. (생략)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생략)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29. (생략)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6.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인구청년과

조 례 명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택법」 제2조(정의)▪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협력체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례안은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자립 기반 강화▪ 지역 내 청년 인구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출 방지○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제5조 :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제1호~제4호의 경우, 기존 사업 수행 중으로 조례안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불필요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안 제5조제5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 황원영(☎054-480-2524)